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안전특별시 구현을 위한

주요 업무 보고

2023. 9.

감사위원회

I

일반 현황

조직 및 인력

조직 5담당관 26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7팀)	공공감사담당관 (4팀)	안전감사담당관 (5팀)	조사담당관 (7팀)	인권담당관 (3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총괄팀 •감사1팀 •감사2팀 •감사3팀 •적극행정팀 •심의1팀 •심의2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감사1팀 •공공감사2팀 •공공감사3팀 •일상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감사1팀 •안전감사2팀 •안전감사3팀 •안전감사4팀 •하도급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1팀 •조사2팀 •조사3팀 •조사4팀 •공익제보조사팀 •기강감찰팀 •윤리사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

인력

(’23.7.31.기준)

구분	총계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계	153	145	45	41	22	21	31	28	35	39	20	16

※ 감사위원장 정·현원은 감사담당관에 포함

기 능

<p>감 사 담 당 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등 지원 • 감사종합계획 수립·조정 •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수립·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 • 시비보조단체 및 보조사업 감사 •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지원
<p>공공감사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기관운영 감사 • 투자·출연기관 인력채용 사전스크린 등 점검 • 투자·출연기관 상임감사·자체 감사기구 평가 • 투자·출연기관 비리신고센터 운영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p>안전감사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재난 대비 대책 등 안전감사 • 도시기반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 • 건설공사 하도급 감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 안전감사음부즈만 운영
<p>조 사 담 당 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비리 및 주요사건 조사처리 • 시정 주요 시책사업 점검 • 공익제보센터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 •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자 취업심사 • 공무원,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처리
<p>인 권 담 당 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침해사항 조사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 인권교육 연간운영계획 수립 및 서울인권아카데미운영 •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이행점검

감사 및 조사 대상

- 대상기관 : 총 865개 기관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 본청·소속기관(123), 시금고(1), 법정 시비 보조단체(13), 투자·출자·출연기관(26), 민간위탁사무(377), 자치구(25), 자치구 금고(25), 구비 보조단체(275)
- 감사주기 : 시 본청 및 소속기관 2년, 투자·출연기관 3년

2023년도 예산

□ 세입 예산 : 총 13,746천원

(2023.7.31.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22년 최종예산	'23년 예산	증 감	%
계	11,202	13,746	2,544	22.7%
경상적세외수입	45	60	15	33.3%
기타이자수입	45	60	15	33.3%
임시적세외수입	11,157	13,686	2,529	22.7%
보조금반환수입	3,880	6,857	2,977	76.7%
기타수입	1,193	1,445	252	21.1%
지난년도수입	6,084	5,384	△700	△11.5%

□ 세출 예산 : 총 2,336백만원

(2023.7.31.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집행률 (B/A)×100
계	2,336	2,336	1,232	1,105	52.7%
행정운영경비	571	571	302	269	52.9%
사업예산	1,765	1,765	930	836	52.7%

○ 세부 현황

(2023.7.31.기준,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100
합 계	2,336,437	2,336,437	1,231,779	1,104,658	52.7%
감사담당관	943,360	943,360	464,766	478,594	49.3%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3,000	13,000	4,085	8,915	31.4%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제고	351,325	351,325	193,896	157,429	55.2%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28,764	28,764	21,749	7,015	75.6%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30,900	130,900	46,595	84,305	35.6%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포상	67,400	67,400	35,890	31,510	53.2%
기본경비	351,971	351,971	162,551	189,420	46.2%
공공감사담당관	111,166	111,166	52,844	58,322	47.5%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강화	72,920	72,920	30,533	42,387	41.9%
기본경비	38,246	38,246	22,311	15,935	58.3%
안전감사담당관	170,483	170,483	110,863	59,620	65.0%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39,940	39,940	29,180	10,760	73.1%
안전감사 활동 강화	78,510	78,510	51,125	27,385	65.1%
기본경비	52,033	52,033	30,558	21,475	58.7%
조사담당관	486,578	486,578	328,901	157,677	67.6%
부조리신고 보상*	5,000	-	-	-	-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5,440	65,440	30,997	34,443	47.4%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244,350	249,350	178,505	70,845	71.6%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42,400	42,400	29,197	13,203	68.9%
기강감찰 운영	37,652	37,652	22,390	15,262	59.5%
기본경비	91,736	91,736	67,812	23,924	73.9%
인권담당관	624,850	624,850	274,406	350,444	43.9%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2,540	62,540	23,328	39,212	37.3%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36,820	36,820	12,300	24,520	33.4%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71,500	71,500	33,110	38,390	46.3%
인권정책 홍보 강화	36,050	36,050	-	36,050	0.0%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4,800	154,800	43,600	111,200	28.2%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42,000	42,000	27,714	14,286	66.0%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27,000	127,000	88,976	38,024	70.1%
인권지킴이단 운영	5,000	5,000	5,000	-	100.0%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52,000	52,000	21,508	30,492	41.4%
기본경비	37,140	37,140	18,870	18,270	50.8%

※ 부조리신고 보상 사업의 관련조례 폐지에 따라,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예산변경

II

정책목표

목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안전특별시 구현

추진
방향

청렴도
상위권 도약

시민불편·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인권 증진



추진
전략
및

실행
과제

반부패·청렴 정책
내실화

- 청렴 자체진단, 알림문자 서비스 확대
- 재미있고 쉬운 청렴 교육 및 홍보 강화
- 청렴지수 평가 등 자율적 청렴활동 강화
- 사전컨설팅 활성화로 적극행정 지원

시민불편·안전분야
집중 감사

- 시민생활밀착 공공시설 집중감사 확대
- 투자·출연기관 재정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강화
- 부패취약 분야 공직기강 확립 강화

약자 보호
감시체계 강화

-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
- 인권교육, 시민인권 증진 활동 강화
-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사로 약자 보호

Ⅲ

주요 추진사업

1 반부패·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 구현

- 1-1 반부패·청렴활동 강화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 1-2 비위근절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사·점검 강화
- 1-3 적극행정지원 내실화를 통한 적극행정문화 확산

2 시민불편·안전분야 집중감사로 시민편의 제고

- 2-1 민간위탁·보조사업 등 비리취약분야 집중감사
- 2-2 투자·출연기관별 맞춤 감사 및 내부통제 활성화 유도
- 2-3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감사 추진

3 약자 보호 감시체계 강화로 시민인권 증진

- 3-1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 3-2 인권침해 조사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
- 3-3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 3-4 건설분야 체불 해소,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감사

1. 반부패·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 구현

1-1 반부패·청렴활동 강화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1-2 비위예방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위한 조사·점검 강화

1-3 적극행정지원 내실화를 통해 적극행정문화 확산

1. 반부패·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구현

1-1 반부패·청렴활동 강화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 ◆ 市 내·외부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시정이미지 구축
- ◆ 공직자의 청렴 참여 활성화를 통한 청렴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

□ 추진계획

-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부패 방지·예방 활동 강화
- 청렴 공감대 형성 및 민관협력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전개

□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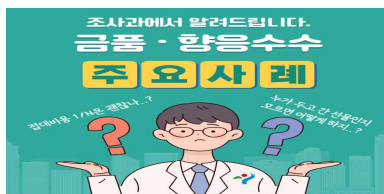
- 고위공직자의 청렴활동을 통한 청렴 관심도 향상
 - 시장 청렴 영상메시지에서 공직자의 청렴실천 당부(5월)
 - 간부공무원 반부패 청렴수준 자가진단 및 반부패 법령 숙지도 평가(7월)
 -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교육 실시(7월)
- 청렴교육 실시로 청렴자세 확립
 - 市 공직자 연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서울특별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 'e-공공재정환수법 바로 알기' 이러닝 신규 제작,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탑재
 - 공무원 청렴교육(3~5월), 6급 이하 승진자 및 신규임용 임기제 교육(5월)
- 내·외부 청렴도 자체 조사를 통한 개선대책 마련

구 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市 6개월 이상 재직 3급 이하 공직자 3,884명 ※ 임기제·공무직 포함, 파견·휴직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민원인 1,153명 - 공사·용역 분야 736명, 보조금 분야 140명, 공유재산 등 민원 277명
기 간	'23.5.~6.	'23.5.~6.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인식(조직문화, 인사, 예산, 업무 지시), 부패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인식(불공정한 직무수행, 공직자의 권한남용), 부패경험
활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실·본부·국)별 결과 통보, 하위기관(4,5등급) 자체 개선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실·본부·국)별 결과 통보, 점수 저조 기관 자체 개선대책 마련

- 부패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청렴 알림문자」 발송(연중 상시)
 - 공사·용역, 보조금, 민원업무 경험자에게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 안내문자 발송
 - 대상업무에 따라 계약(접수 등), 완료(처리 등) 단계마다 발송
 - ※ '23년 상반기 발송 건수 : 6,870건(공사·용역 2,952건, 보조금 3,661건, 민원 257건)
- 주요 민원업무 만족도 조사 「청렴 해피콜」 실시(6~8월)
 - 대상업무 : ① 비영리단체 등록관리 ② 공유재산 관리 ③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④ 다량급수처
 - 조사방법 : 친절도, 신속·공정성, 업무처리 만족도, 주요 불편사항 전화설문
- 청렴주간과 연계한 홍보활동 전개
 - 부패취약기간(명절, 연말연시 등) 중 청렴주간 지정
 - 청렴 OX퀴즈, 주요 비위사례 및 체크리스트 공유, 청렴 정책·정보 공유 등
 - 市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등에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홍보영상 표출



청렴 OX퀴즈



주요 비위사례



홍보영상

-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 청렴 이슈 발굴·논의를 통해 '23년 실천의제로 '갑질행위 근절' 선정
 - 올해의 실천의제 및 청렴 현안·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청렴사회협약 지속 이행

□ 향후계획

- 감사담당관 주관 청렴 대면교육 실시 : 10월
 - 하반기 승진자, 신규임용 임기제, 희망자 약 500명
-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로 자율적 반부패 활동 독려 : 11월
 - 청렴교육 이수율,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청렴활동 참여도 등 반영, 우수부서 포상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하정 청백리상 공모·선정 : 9~11월
 - 자치구, 공공기관 대상 반부패(기관) 및 청렴실천(개인) 우수사례 포상
 - 市·자치구 공무원 중 청렴·결백, 헌신·봉사, 시정 발전에 큰 공헌한 자 포상

1-2 비위근절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사·점검 강화

- ◆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직사회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처분
- ◆ 언론 비판사항, 민원처리 부적정, 제보 등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직무감찰 강화

□ 추진계획

- 비위근절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사·점검·직무감찰 실시
 - 신속하고 공평하며 형평에 맞는 조사 등을 수행하여 공직기강 확립
 - 비위에 엄격하되, 업무상 과실은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
- 비위발생 예방 중심의 조사 및 사례 전파 실시
 - 비위행위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 방안 제시
 - 주요 비위사례 및 징계 현황을 정례적으로 게시하여 경각심 고취(분기별 1회 이상)

□ 추진실적

- 사건사고, 언론보도 및 제보사항 등 조사 실시

(’23. 7. 31.기준)

행정상 조치 (건)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명)	중징계	경징계	훈계·주의 등	계(건)	금액(천원)
55	46	9	14	23	4	28,725

-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무감찰 실시
 - 복무 규정, 서울시 행동강령 등 위반 행위자에 신분상 조치(12명)
- 공직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및 자료 게시
 - 전 기관 대상 비위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안내 공문 시행(6회)
 - 행정포털 내 교육 자료 및 비위사례 게시(22회)
 -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교육 자료 및 ‘조사과에서 알려드립니다’(복무위반 사례) 등 게시

□ 향후계획

- 주요 시책점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사·점검 실시 : 상시
- 추석 명절(9월)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 9~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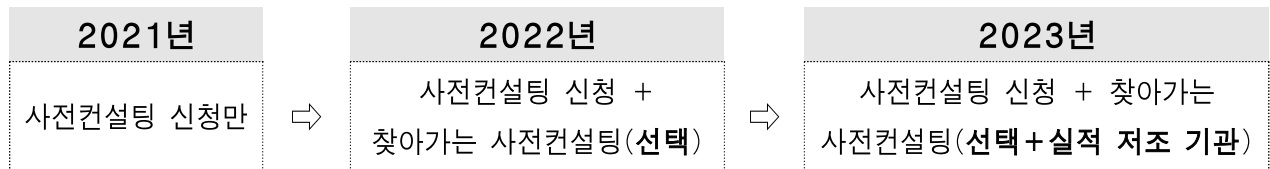
1-3

적극행정지원 내실화를 통한 적극행정문화 확산

- ◆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사결정 지원
- ◆ 인센티브 확대 및 정보 공유를 통한 동기부여 및 적극행정 분위기 정착

□ 추진계획

- 적극행정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구축 및 인센티브 강화
- 사전컨설팅 제도 등 적극적인 홍보 추진으로 우리시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원대상 발굴 및 현장 문제 해결 지원



□ 추진실적

- 적극행정 체계적 지원을 위한 '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6월)
 - 법제 정비, 의사결정 지원, 면책 등 업무과정 전반에 적극행정 지원
- 2023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및 부서 표창 (4~5월)
 - 우수사례 7건 선정 후 시장상(최우수1건, 우수2건, 장려4건) 및 시상금 수여
- 지속적 사전컨설팅 지원으로 민생회복 및 신규사업 등 시민체감 사업 해결
 - ※ 사전컨설팅 현황 : 60건('20년) → 68건('21년) → 87건('22년) → 39건('23년 8월)
- 자치구, 투출기관, 사업소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실시 (4월~)
 - '23년 8월까지 4개 기관 방문하여 현장상담, 제도교육, 기관협의 등 진행
- 사전컨설팅·적극행정 우수사례집, 홍보동영상, 리플릿 제작·배포 (2월~)

□ 향후계획

- ‘사전컨설팅’ 상시 운영 및 ‘찾아가는 사전컨설팅’(5개 기관) 진행 : 9월~
-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9월) 및 우수공무원 선발 : 10월~

작성 자

감사담당관:김현중 ☎ 2133-3010 적극행정팀장: 김유용 ☎ 3185 담당: 남영은 ☎ 3187

2. 시민불편·안전 분야 집중감사로 시민편의 제고

2-1 민간위탁·보조사업 등 비리취약분야 집중감사

2-2 투자·출연기관별 맞춤 감사 및 내부통제 활성화유도

2-3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감사추진

2. 시민불편·안전 분야 집중감사로 시민편의 제고

2-1 민간위탁·보조사업 등 비리 취약분야 집중감사

- ◆ 민간위탁·보조사업 등 부패 취약 분야에 감사역량 집중으로 비리 근절
- ◆ 시민생활 밀착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 및 제도개선으로 만족도 제고

□ 추진계획

-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등 전통적 부패 취약분야 집중감사 및 모니터링
 - －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 평가결과 하위평가 및 장기 미수감 기관 중점 감사
 - － 의회·언론 등에서 문제제기된 보조사업 대상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 점검
-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밀집시설 선제적 감사로 시민불편 해소
 - － 감사주기 도과된 장기 미수감 기관 및 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감사 추진

□ 추진실적

-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집행, 정산,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전 과정 감사
 -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실태 감사(3월) ※ 세출예산 집행 및 전용 부적정 등 28건 지적
-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 평가결과 하위평가(80점 미만) 기관 중점 감사 추진
 -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6월)
- 시민불편해소 및 여가·문화 활동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감사 추진
 - － 보건환경연구원 기관운영 감사(3월), 서울식물원 기관운영 감사(6월)
- 전국 최초 '청백-e시스템, 市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 상시 감시체계 운영
 - －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례 발생시, 사업담당자에게 경보 발생·처리('22.12월~)

□ 향후계획

- 취약계층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실태 등 보조금 감사 : 8~10월
- 소방재난본부, 서울역사박물관,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감사 : 10~12월

2-2 투자·출연기관 맞춤 감사 및 내부통제 활성화 유도

- ◆ 감사주기 도과, 시민접점, 저성과 기관 등 취약분야 집중 감사
- ◆ 투자·출연기관 및 시 감독부서의 내부통제 강화로 상시 감사체계 마련

□ 추진계획

- 감사주기(3년) 도과, 시민복지 밀접 기관 및 외부지적 비위 집중 감사
 - 장기 미수감 기관 대상 기관 운영방향 설정 및 일상화된 비위 일소에 중점
 - 시민 복리증진과 직접 관련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점검
 - 저성과 기관의 비효율, 방만경영 해소 및 외부지적 사항 특정감사 실시
- 기관 자정능력 제고를 위한 자체점검 및 내부통제 활성화 지원
 - 투자·출연기관 자체 비리예방 시스템 운영, 자체감사 역량평가 지속

□ 추진실적

- 감사주기 도과된 장기미수감 기관 대상 종합감사 추진
 - 서울시복지재단(6월), 서울장학재단(7월)
- 시민접점 기관 종합감사와 외부지적 사항에 대한 특정감사 추진
 - 서울시설공단(3~4월),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6월)
-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평가를 통해 감사역량 강화 추진
 - 부패방지 시책평가(5월), 투자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7월)
- 시 주관부서, 투자·출연기관 취약분야 자체 점검(6월)으로 비위 사전예방
- 출연기관 일상감사제도 운영실태 감사(6월) 실시

□ 향후계획

- '23년 투자·출연기관 채용실태 조사 : 8~9월
-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120다산콜재단 종합감사 : 9~11월

2-3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감사 추진

- ◆ 시민일상과 직결되는 시설물 집중·선제적 점검으로 안전서울 구현
- ◆ 중대재해 위해·위험 요인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 중심 감사 실시

□ 추진계획

- 계절별 안전취약시기 도시기반·시민생활 밀접시설 안전감사 강화
 - 해빙기 취약시설물(2월), 도로시설물(4월), 행락철 공원녹지(4월), 풍수해 대비 지하철도(5월), 여름철 물놀이시설(7월), 공사장(9월)
- 불특정 다수 이용 시민생활 및 안전취약계층 밀접시설 선제적 감사 실시
 - 노인복지시설·시립병원(8월), 도로무단점유 건축물(9월), 문화시설(10월)
- 재난대응 역량강화, 중대재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예방 중심 감사 추진
 - 재난시스템 운영점검(7~8월), 중대재해 예방점검(10월)

□ 추진실적

- 도립보도육교 붕괴사고 조사(1월) : 총 16건 지적(주의 11, 통보 5)
 - 심사 선정된 특허공법 미반영, 무자격자 설계 위탁 부적정 등
- 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1월) : 총 30건 지적(시정요구 1, 주의 15, 통보 14)
 - 민간위탁 수의계약(재계약) 부적정, 수탁기관 지도·감독 미흡 등
-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2월) : 총 167건 지적(통보 167)
 - 옹벽·석축 등 균열, 건설공사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불량 등
-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안전점검(7월) : 총 48건 지적(시정요구 2, 통보 10, 현지시정 36)
 - 운영계획 부실, 수질관리 미흡, 안전요원 배치기준 미준수 등

□ 향후계획

- 피난약자 복지시설, 도로무단점유 건축물, 건설공사장 등 안전감사 : 8~9월
- 문화시설, 아리수정수센터, 중대재해 예방 감사 : 10~12월

3. 약자 보호 감시체계 강화로 시민인권 증진

3-1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3-2 인권침해 조사·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

3-3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3-4 건설분야 체불해소, 불법·불공정하도급 예방감사

3. 약자보호 감시체계 강화로 시민인권 증진

3-1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 ◆ 「인권도시 서울」 강화를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구축
- ◆ 인권적 관점의 정책개선 활성화로 인권 친화적 행정환경 지속 조성

□ 추진계획

- 시정에 인권 관점 반영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 비(非)인권적 정책 등 개선을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인권지킴이단 추진
- 인권적 행정지원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및 市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 추진

□ 추진실적

-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3~'27) 및 시행계획 수립(3~5월)
 - 「더 나은 삶을 향한 동행, 인권도시」를 위한 4대 분야, 34개 과제 발굴
 - 시민공청회(1회), 市 인권위원회 심의자문(2회), 전문가 자문(6회) 등 이행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기회(2회), 신규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활동 전개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 등에 대한 인권위원회 심의·자문(8건)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변호사 등 인권지킴이단 선발(26명) 및 현장방문(6회)
- 인권영향평가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인권경영 평가 추진
 - 분야별(안전, 보건) 서울형 인권영향평가 모델 개발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를 위한 상반기 지도·점검 진행(7~9월)

□ 향후계획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기회(2회) 개최 : 9월 / 12월
- 인권지킴이단 활동 : 9~10월
 - 노인 양로·요양시설 내 비인권적 요소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4회)

3-2 인권침해 조사·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

-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 ◆ 시민참여형 인권보호 활동으로 인권가치 확산 및 인권침해 예방

□ 추진계획

-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결정을 위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정례적 운영
-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민인권배심회의 운영

□ 추진실적

- 2023년 인권침해사항 상담 및 조사 실시 (‘23.7.31. 기준)

상담 건수(접수일 기준)			조사 건수(결정일 기준)				비고
계	사건접수	상담종결	계	권고	기각·각하 등	조사중	
198	17	181	25	5	17	3	전년도 이월사건(8건)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 8회(정기회 6회/임시회 2회)
 - 인권침해사건 심의 및 의결 : 총 22건(권고 5건, 기각·각하 등 17건)
- 공공기관 장애인 직원 고용차별 등 2023년 인권 실태조사 5건 추진 중
 - 인권실태조사 결과 관련 기관(부서)에 정책개선 권고 등 시행 예정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료비, 긴급생계비 등 지원(5개 단체, 125백만원)

□ 향후계획

- 2022 결정례집 제작 배포 추진 : 9월
 - 인권침해 예방 및 사례 전파를 위한 2022년 인권침해 결정례집 배포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3회) 및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2회) : ~ 12월
 - 인권침해사건 심의·의결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 2023년 인권 실태조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추진 : ~ 12월

3-3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 ◆ 市 직원 대상 지속적인 인권교육 통해 인권 의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
- ◆ 시민 대상 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으로 인권문화 조성 및 인권역량 강화

□ 추진계획

- 市 본청·산하기관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이수
- 인권 이해 증진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온·오프라인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권가치 확산

□ 추진실적

- 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대상 집합교육(12회, 674명 이수)
 - e-인권의 이해 등 온라인교육(20개 과정) 실시 중
 - ‘정보와 인권’ 주제 웹드라마 등 인권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중 (총 3편)
- 공개모집을 통한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 일반시민·학생 등 공개모집을 통한 대면 현장탐방 및 온라인탐방 병행 운영
 - ※ 대면탐방(7개 코스, 30회, 500명), 온라인탐방(5개 코스, 하반기)

□ 향후계획

- 인권교육 실시 및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 : ~ 12월
 - 직원 대상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운영 및 교육 이수율 관리
 - 인권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완료 및 등재 (인재개발원·평생학습포털)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 ~ 12월

3-4 건설분야 체불 해소,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 감사

- ◆ 건설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체불현장 조사 확대
- ◆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을 위한 단계별 감시체계구축 및 점검 강화

□ 추진계획

-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및 하도급 감사 추진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대상 확대 운영 및 체불현장 점검 강화
 - 신고센터 신고대상을 기존 ‘임금체불’ 에서 ⇒ ‘불법·불공정 하도급’ 으로 확대
- 체불발생 취약분야 사전 서면조사 강화 및 건설분야 현장 예방지도 실시

□ 추진실적

- 불공정·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장 하도급 감사 실시(5~6월)
 - 감사대상 : 한강사업본부 등 5개 기관 171개 공사 ※ 감사위원회 부의예정('23.9월)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상시) : 124건 접수, 334백만원 체불 해소(7.31.기준)
- 건설현장 체불예방 및 해소를 위한 현장 점검 및 서면조사 등 추진
 -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점검(1월) : 829백만원 명절 전 조기 지급 조치
 - 체불해소를 위한 현장기동반 운영(상시) : 4개 현장, 19백만원 체불 해결
 - 체불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5월) : 108개 현장, 234건 지적(행정처분 44건)
 - ※ 호민관 현장 예방지도 : 법률자문(35회), 감사점검 참여(2회), 교육 실시(5개 기관, 공사민폐자 152명)

□ 향후계획

-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기동반’ 운영 : 상시
- 2023 하반기 체불발생 취약분야 서면조사 : 9월
- 추석 명절 전 체불예방 현장점검 : 9월

2023년 월별 감사계획

□ 총 11개 분야 (종합감사 4, 특정감사 7)

(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감사 1·2·3팀
2월 ~ 4월	종합	보건환경연구원 기관운영	보건환경연구원	감사1팀
	특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행정국(남북협력과)	감사2팀
	특정	보조사업(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실태	여성가족정책실(아이돌봄담당관), 4개 자치구(노원, 서대문, 관악, 송파)	감사3팀
6월 ~ 7월	종합	서울식물원 기관운영	서울식물원	감사2팀
	특정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운영 및 관리실태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	감사3팀
8월 ~ 9월	특정	취약계층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실태	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시민건강국(정신건강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1팀
	특정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	미래청년기획단(청년정책반), 자치구	감사3팀
10월 ~ 12월	종합	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	소방재난본부	감사2팀
	종합	서울역사박물관 기관운영	서울역사박물관	감사1팀
	특정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실태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감사3팀

□ 총 12개 분야 (종합감사 6, 특정감사 6)

(공공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공공감사 1·2·3팀
3월 ~ 4월	종합	서울시설공단 기관운영	서울시설공단, 안전총괄실(도로시설과) 등	공공감사3팀 (1,2팀 참여)
6월 ~ 7월	특정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공공감사팀
	종합	서울시복지재단 기관운영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	공공감사2팀
	종합	서울장학재단 기관운영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국(교육지원정책과)	공공감사3팀
	특정	출연기관 일상감사제도 운영실태	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일상감사팀
	특정	일상감사 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일상감사팀
8월 ~ 9월	특정	'23년 제6차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투자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감사팀
	종합	서울에너지공사 기관운영	서울에너지공사, 기후환경본부(녹색에너지과)	공공감사2팀 (3팀 참여)
	특정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실태	본청, 본부, 사업소 등	일상감사팀
10월 ~ 11월	종합	120다산콜재단 기관운영	120다산콜재단, 홍보기획관(민원담당관)	공공감사팀
	종합	서울의료원 기관운영	서울의료원, 시민건강국(공공의료추진단)	공공감사3팀 (2팀 참여)

□ 총 15개 분야 (특정감사 15)

(안전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안전감사 1·2·3·4팀
	특정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예방 점검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특정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 조사	영등포구청	안전감사2팀
3월 ~ 4월	특정	해빙기 노후 도시기반시설 관리실태	북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안전감사2팀
	특정	행락철 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푸른도시여가국(공원여가정책과, 중부·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시설공단(어린이대공원)	안전감사3팀
	특정	수방 관련 지하차도 배수설비 유지관리실태	안전총괄실,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안전감사4팀
5월 ~ 8월	특정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건설하도급분야 감사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특정	서울시 민방공 및 재난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안전감사1팀 (2,3,4,하도급 감사팀 참여)
8월 ~ 9월	특정	풍수해 대비 서울주택도시공사 가시설 및 대형 장비 안전관리실태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전감사3팀
	특정	피난약자 이용시설 화재예방 안전실태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시민건강국(공공의료추진반)	안전감사4팀
9월 ~ 11월	특정	시립 문화시설 안전관리실태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안전감사4팀
	특정	도로무단점유 등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주택정책실, 디지털정책관, 자치구	안전감사2팀
	특정	중대재해 예방실태 점검	시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안전감사1팀
	특정	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실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안전감사3팀
	특정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실태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수시	특정	각종 긴급 점검 및 안전사고 조사	시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안전감사1팀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

□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2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32	32	-	-	-
	시정· 처리요구사항	14	14	-	-	-
	건의 사항	13	13	-	-	-
	기타(자료제출 등)	5	5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재난대응 시스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사 가능 여부 검토 및 감사에 나서 위원회의 책무를 다해야 함.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및 재난대응시스템운영실태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민방공 및 재난시스템 운영실태 점검('23.6.~)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 국정조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완료되었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임. 또한, 중앙부처·타기관이 관련된 사건으로 별도 서울시 감사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중인 감사 관련 서울시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및 재난대응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 조치 예정
<p>○ 4기 인권위 발족까지 7개월이 소요되었고, 조례상 정해진 연 4회의 정례회도 열지 못하게 되었음. 인권위를 조속히 정상 운영하여 이러한 상황을 시정할 것 (인권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기 인권위원회 발족('22.11.1) 및 위원 추가위촉(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15명('23.8월 기준) - 임기 : '22.11.1~'25.10.31(3년) ○ '22년 정기회 개최('22.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선출, 업무보고,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자문 등 ○ '23년 1차 정기회 개최('23.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결과 보고,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심의 및 자문, 부위원장 선출 등 ○ '23년 2차 정기회 개최('23.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심의, 인권실태조사 자문, 인권포럼 자문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3차 정기회 개최 : '23. 9월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시청 직원 인권교육 이수율은 37%에 불과하므로, 공무원들의 인권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이수율을 제고할 것 (인권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인권교육 이수율('22.12.31 기준) : 96% ○ 인권교육 이수율 제고 조치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인권교육 이수율 공개 - 실국장 간부회의 시 인권교육 이수 독려 요청 - 이수율 저조 부서에 개별 연락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인권교육 추진 : '23. 3~12월
<p>○ 행정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의 예산집행률 수치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음. 제출된 자료들의 수치에 오차가 발생하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앞으로는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집행률은 일상경비교부금을 포함한 기준으로, 업무보고서의 집행률은 일상경비교부금을 제외한 집행률 기준으로 집계함에 따라 발생한 오차로, 향후 예산집행률과 관련된 자료 제출 시에는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음
<p>○ 용역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 감사할 것 (인권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인권교육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진행했으며 관련 법령위반 등 문제점은 없었음. ○ 다만, 동일기관 반복낙찰에 의한 제한적 강사풀, 유사반복 커리큘럼 운영에 따른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인권교육 수행방식을 용역에서 직접수행으로 변경하여 추진중('23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인권교육 추진 : '23. 3~1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는 2등급을 받음. 그러나 2021년도 4등급으로 점수가 하향됨. 신뢰받는 서울시가 되기 위해 청렴도 등급 유지에 힘써줄 것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3등급(전년 대비 1등급 향상) ① 청렴체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청렴도 자체 설문조사 실시로 취약분야 점검 - 시장단 청렴 영상메시지, 청렴 OX 퀴즈, 청렴서약 릴레이 등을 통한 직원의 관심 환기 - 민원인 대상 청렴 알림문자 발송, 청렴 해피콜 실시 등 ② 청렴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직자 및 직원 청렴교육 이수 철저 - 부패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마련,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적극 대응(12월 결과 발표 예정)
<p>○ 인권은 다수집단이나 소수집단이나 누구에게나 중요하니 인권교육시 계층을 나누지 말고 보편 타당한 인권교육을 진행할 것 (인권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은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고려하여, 다수·소수 집단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인권교육 추진 : '23. 3~12월
<p>○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원들도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시의회 의원들의 임기 전 의원 자리가 공석인 채 위원회가 개최됨. 시의회 임기는 정해져 있으므로 의원 위원이 공석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 회의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인 시의회 의원들과 2023년 위원회 회의 일정 협의('22.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회 개최(3.23. / 5.25. / 7.6. / 9.21. / 11.23.) ○ 2023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방침 수립 및 안내('22.12.27)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공무원 안전순찰의 경우 성동구 감사담당관 288건, 강동수도사업소 114건 등 자치구 간 신고 건수의 차이가 있음. 신고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신고 건수를 높일 수 있도록 자치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줄 것을 당부함. (안전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공무원 안전순찰 활성화 방안 수립('23.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벤트 기간연장) 안전순찰 이벤트 참여(신고)기간 1 → 2개월 운영 - (포상인원 확대) 상·하반기 포상인원 160명 → 170명 확대 운영 - (포상대상 참여확대) 신고(접수)처리부서 담당직원 포상확대 22명 ○ '23년 공무원 안전순찰제도 홍보 및 포상안내('23.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 분청·사업소(259개 과,담당관 등), 자치구(476개 부서·기관) ○ '23년 시구 감사협의회 개최에 따른 자치구 협조안내('23.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대상 : 감사위원회, 25개 자치구 감사담당관 - 회의내용 : 공무원 안전순찰제도 및 참여, 감사 반복지적사항 재발방지, 하도급 부조리 근절 운영 안내 등 ○ '23년 상반기 공무원 안전순찰 이벤트 및 포상 실시('23.6월,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처리실적 1,073건, 추천 및 포상 106명, 총 462만원 지급 ※ '22년 상반기 신고·처리실적 1,362건, 추천 및 포상 210명, 총 916만원 지급 ○ '23년 공무원 안전순찰 하반기 이벤트 및 포상 실시('23. 9월, 12월)
<p>○ 스마트밴드, 서울런 사업에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감사위원회가 예비점검에 나서야 함. (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헬스케어 및 서울런 관련 조사 실시('22.12.13~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스마트건강과, 교육지원정책과 - 조사내용: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 확인 - 조사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업 추진 중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마련 요구 ○ 조사결과 지적사항 통보('23.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런) 학습사이트 등 서비스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안내 철저 - (헬스케어) 장기간 미반납 중인 스마트밴드의 회수 조치 철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조사담당관의 업무로 시정 주요 시책사업 확인·점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오세훈 시장 주요 시책사업 파악 현황, 점검한 내용,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것 (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5조 제5항의 규정에 명시된 조사담당관 소관 업무분장으로 명시된 “주요 시책 사항 의 점검”은 언론비판 보도, 사건사고 발생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연도별 계획수립 및 별도 종합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지는 않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언론비판 보도, 주요 사건사고 발생시 해당사항에 대해 별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임
<p>○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경우 잘못된 서울시정을 비판하는 등 제대로 견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음. 반대로 시정을 견제하고 쓴소리를 해야 하는 감사위원회는 오세훈 시정을 앞장서서 비호하는 조직이라는 평가가 있으므로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함.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40조 제2항에 의거 감사위원장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있음. ○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6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면밀한 심의·의결을 통해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p>※ 감사위원회 위원 : 총 7명(위원장1, 외부위원6명)</p>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감사위원회의 목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특별시를 구현하는 것. 공정과 신뢰는 정의로운 과정과 공평한 결과가 전제되어야 함. 이는 시장이 누구든 시장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피감기관이 어디든 결과가 객관적이며 납득, 타당해야 함을 의미함. 하지만 최근에 진행된 감사들의 경우 시장의 의도에 따라 결과를 정해놓고 퍼즐을 맞추는 감사라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감사위원장이 감사원에서 파견되었던 과거와 달리 시장이 임명권자인 순환보직의 행정 공무원인 현 체계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음. 이러한 지적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는 가일층 정의롭고 공평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p> <p>(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서 감사 사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감사위원회(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마중)에 대한 특정감사는 '21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실시되었다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에서 서마중에 대한 감사는 '건의사항'으로 서울런 사업은 여러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감사를 적시함. 행정사무감사의 강력한 지적사항인 시정요구 사항은 도외시 하고, 건의사항만 받아들여 감사의 근거로 명시한 것은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서마중의 감사가 애초에 형평을 잃은 표적 감사임을 보여주는 단면임. 감사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와 공정한 감사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바람.</p> <p>(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건의사항 등 시의회 지적사항 중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감사 실시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객관적인 근거와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p>○ 위법 사항에 대한 자료조사를 철저히 할 것. 이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감사를 해주기를 바람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실지감사(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자료조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힘쓰겠음. 																														
<p>○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인 공익감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지감사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사업의 지도점검, 서면 자문 등에도 공익감사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금 10억 원 이상 사무에 대해 연 1회 전문가 동반 현장점검 의무화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조직담당관-10943호, '21.10.11.)로 공익감사단 수요 증가 추세 ○ 연도별('20~'23.8.) 공익감사단 활동 실적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단위 : 건, 명)</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10%;">연도</th> <th style="width: 20%;">감사 참여건수</th> <th style="width: 20%;">감사 참여인원</th> <th style="width: 20%;">총 활동건수</th> <th style="width: 20%;">총 활동인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56</td> <td style="text-align: center;">139</td> <td style="text-align: center;">239</td> <td style="text-align: center;">49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 style="text-align: center;">27</td> <td style="text-align: center;">37</td> <td style="text-align: center;">8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1</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 style="text-align: center;">38</td> <td style="text-align: center;">56</td> <td style="text-align: center;">13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2</td> <td style="text-align: center;">19</td> <td style="text-align: center;">53</td> <td style="text-align: center;">99</td> <td style="text-align: center;">18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3.8.</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47</td> <td style="text-align: center;">93</td> </tr> </tbody> </table> ○ 분야별 공익감사단 총 165명 재위촉 및 신규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 기 : '23. 5. 1. ~ '25. 4. 30.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강화로 감 조사 및 지도점검, 자문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익감사단 적극 활용 예정 	연도	감사 참여건수	감사 참여인원	총 활동건수	총 활동인원	계	56	139	239	496	2020	16	27	37	85	2021	16	38	56	134	2022	19	53	99	184	2023.8.	5	15	47	93
연도	감사 참여건수	감사 참여인원	총 활동건수	총 활동인원																											
계	56	139	239	496																											
2020	16	27	37	85																											
2021	16	38	56	134																											
2022	19	53	99	184																											
2023.8.	5	15	47	93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자료제출 협조 요청 -10월 29일~30일에 해당하는 안전총괄실 산하 재난상황실 업무 일지·서울시 종합상황실 (당직실) 업무 일지·120 다산콜센터 신고 접수 현황 및 내용 (안전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담당관, 총무과, 안전총괄과에 박유진 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 발송('22.11.15.) ○ 120다산콜재단에 박유진 의원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 발송('22.11.16.)
<p>○ 서울시 직위표 상 행정1, 2부시장 산하에 있는 모든 담당관, 실·국은 감사 위원회의 감사 대상임. 과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권자인 시민이 받아들이는 정서적 온도와 눈높이도 감안하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를 검토해 줄 것.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중대재해, 태풍 등 각종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시의 재난대응실태에 대해 수시로 감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실태 점검('22.4.) -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긴급 재난대응실태 특별 점검('22.9.) - 서울시 민방공 및 재난시스템 운영실태 점검('23.6.~)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 국정조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완료되었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임. 또한, 중앙부처·타기관이 관련된 사건으로 별도 서울시 감사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수사 결과 지도·감독 소홀 등 구체적인 위법부당 사항 확인시 감사 추진 검토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시설물,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사전적인 감사활동 활성화가 필요. 앞으로 감사위가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고 감사활동을 하길 바람.</p> <p>(안전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안전취약시기, 불특정 다수이용 시설 선제적 감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힌남노 북상 재난대응실태 점검('22.7월) - 서울시 다중밀집 안전취약지역 등 특별점검('22.11~12월) - 해빙기 취약시설물 점검·도로시설물 감사('23.2월, 4월) - 행락철 공원녹지('23.4월),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감사('23.5월) - 여름철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안전점검('23.7월) ○ 재난대응 역량강화, 중대재해 위험요인 사전차단 감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시스템 운영점검('23.7~8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안전취약시기, 불특정 다수이용 시설 선제적 감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해 대비 공사장 가시설 및 대형장비 안전실태('23.9월) - 시립 문화시설 안전관리실태('23.10월) ○ 중대재해 위험요인 사전차단 감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예방점검('23.10월)
<p>○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프로그램의 성과가 좋음.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해 주기 바람.</p> <p>(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3.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추진 계획」 수립 후 11개 기관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추진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컨설팅 제도 교육(약 300여명), 현장 상담(28건), 기관 협의진행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지속 추진(10개기관) 중이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인센티브 홍보 교육을 추가 편성하여 적극행정 선순환 구조 조성 및 제도홍보에 힘쓰고자 함.

건의사항	조치결과									
<p>○ 명예하도급호민관과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협업할 수 있도록 고민해볼 것. (안전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조사 시 명예하도급호민관과 시민참여옴부즈만 상호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단 상호공유 및 감사·조사시 해당 분야별 전문가 참여 및 자문 실시 ('23.2월 협의 완료) <table border="1" data-bbox="571 600 1433 801"> <thead> <tr> <th>구분</th> <th>인원구성</th> <th>운영기관</th> </tr> </thead> <tbody> <tr> <td>명예하도급 호민관</td> <td>변호사, 기술사, 노무사 등 건설하도급 민간전문가 총 16명</td> <td>감사위원회</td> </tr> <tr> <td>시민참여 옴부즈만</td> <td>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 총 90명</td> <td>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감사·조사 및 자문시 명예하도급호민관, 시민참여옴부즈만 상호 참여 추진 	구분	인원구성	운영기관	명예하도급 호민관	변호사, 기술사, 노무사 등 건설하도급 민간전문가 총 16명	감사위원회	시민참여 옴부즈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 총 90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구분	인원구성	운영기관								
명예하도급 호민관	변호사, 기술사, 노무사 등 건설하도급 민간전문가 총 16명	감사위원회								
시민참여 옴부즈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 총 90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p>○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 고민해볼 것. (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컨설팅으로 시책사업 의사결정 지원(87건) - 적극행정 면책 신청(2건)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27건 (상반기 7, 하반기 20)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반기 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참여자 중 특별승급 추천 완료(6명),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예정(9명), 특별휴가(2일) 부여 완료(28명) ※ 자치구, 공사공단은 자체 포상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부터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중복 부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수공무원 전원에게 특별휴가 및 성과급,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하여 공무원 사기 진작이 강화 ※ '22년도까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 중복부여 불가 									

건의사항	조치결과
<p>○ 공직자재산신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의원들이 공직자재산 등록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이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원들에게 공직자재산등록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것. (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재산신고관련 정보공개 동의서 안내('22.11.10.) ○ 2023년 재산신고관련 고지거부 신청 안내('22.12.26.) ○ 2023년 재산신고 온라인 교육 실시('23.1.16~31, 인사혁신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현금, 예금, 증권신고 방법 등 ○ 재산신고 온라인 교육 녹화영상 추가 배포('23.1~2월) ○ 2023년 재산신고 안내서 책자 제작 및 배부('23.2.3.) ○ 이해충돌방지법 온라인 교육 운영('23.1.~12. 국민권익위원회) ○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책자 및 홍보 리플릿 배부('23.1~2월)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대면 특강('23.7.21.)
<p>○ 공무원 안전순찰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해 줄 것 (안전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공무원 안전순찰 활성화 방안 수립('23.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벤트 기간연장) 안전순찰 이벤트 참여(신고)기간 1개월→2개월 운영 - (포상인원 확대) 상·하반기 포상인원 160명 →170명 확대 운영 - (포상대상 참여확대) 신고(접수)처리부서 담당직원 포상확대 22명 ○ '23년 공무원 안전순찰제도 시·구 감사협의회 개최 및 홍보 실시('23.3.10) ○ '23년 공무원 안전순찰 상반기 이벤트 및 포상 실시('23. 6월~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처리실적 1,073건, 추첨 및 포상 106명, 총 462만원 지급 ○ '23년 공무원 안전순찰 하반기 이벤트 및 포상 실시('23. 9월, 12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해 신경쓸 것 (안전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공무원 안전순찰 활성화 방안 수립('23.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유도를 위한 포상금 지급방법 다양화(처리 신고부서 포상 등) - 신고실적, 참여도 등 우수공무원 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 제공 - 행정포털 시·구게시판 등 참여방법 안내 및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활성화 유도 ○ 2023년 공무원 안전순찰제도 참여안내 및 홍보 실시('23.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구대상 안전순찰 홍보 및 포상계획 안내(3.10), - 시·구 감사협의회 개최(3.15) ○ '23년 공무원 안전순찰 상반기 이벤트 및 포상 실시('23. 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처리실적 1,073건, 추첨 및 포상 106명, 총 462만원 지급 ○ '23년 공무원 안전순찰 하반기 이벤트 및 포상 실시('23. 9월, 12월)
<p>○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밴드, 서울런 사업은 물품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는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검토내용 제출할 것. (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헬스케어 및 서울런 관련 조사 실시('22.12.13~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스마트건강과, 교육지원정책과 - 조사내용: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 확인 - 조사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업 추진 중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마련 요구 ○ 검토 결과 의원실 제출 완료('23. 3. 6.)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서울형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스마트밴드를 나눠주는 사업으로, 사업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낭비 그리고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있음. 서울런 사업 또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부 등의 사업과 유사, 중복’, ‘사설학원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입’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정규교육과정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교육청이 아닌 서울시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그러므로 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혼란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함.</p> <p>(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헬스케어 및 서울런 관련 조사 실시('22.12.13~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스마트건강과, 교육지원정책과 - 조사내용: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 확인 - 조사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업 추진 중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마련 요구 - 조사결과 지적사항 통보('23.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런) 학습사이트 등 서비스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안내 철저 · (헬스케어) 장기간 미반납 중인 스마트밴드의 회수 조치 철저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관련 안전감찰 제도 변경 내용 (제도 개요, 감찰 권한기능 등) (안전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출 완료 ('22.11.16.)
<p>○ 용역 계약 시 위원회에서 어떤 공고를 냈고, 어떤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계약 입찰 심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인권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출 완료 ('22.11.18.)
<p>○ TBS에 대한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바람. 교통방송이 공정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질책할 것 (공공감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출 완료('22.11.15.) ○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 확보와 공적 책무 이행 등 감사 지적사항의 적정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이행완료 확인
<p>○ 오세훈 시장 주요 시책사업 파악 현황, 점검한 내용, 점검 계획 제출 및 보고 (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5조 제5항의 규정에 명시된 조사담당관 소관 업무분장으로 명시된 “주요 시책 사항 의 점검”은 언론비판 보도, 사건사고 발생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연도별 계획수립 및 별도 종합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지는 않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언론비판 보도, 주요 사건사고 발생시 해당사항에 대해 별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임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 스마트밴드·서울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파악 및 제출 (조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헬스케어 및 서울런 관련 조사 실시('22.12.13~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스마트건강과, 교육지원정책과 - 조사내용: 공직선거법 등 위반 여부 확인 - 조사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업 추진 중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마련 요구 ○ 검토 결과 의원실 제출 완료 ('23. 3. 6.)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

감사위원회

□ 총 6건 건의

연 번	건의제목	건의부서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 '23. 7. 11. 시 법무담당관 개정 건의(소관 감사원)	감사담당관
2	공직자윤리법 개정 건의 ※ '23. 7. 11. 시 법무담당관 개정 건의(소관 인사혁신처)	조사담당관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 '23. 8. 16. 인사혁신처 개정 건의	조사담당관
4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건의 ※ (조례 시행일 전) '23. 3. 23. 국토교통부 개정 건의	안전감사담당관
5	발주자의 하도급 및 건설기계관리 책임강화를 위한 국토부 법령 및 고시(지침) 개정 건의 ※ (조례 시행일 전) '23. 5. 19. 국토교통부 개정 건의	안전감사담당관
6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 '23. 6. 28. 시 법무담당관 개정 건의(소관 국회사무처)	감사담당관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감사담당관, '23. 7. 11.)</p>	<p><input type="checkbox"/>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수급안·하수급인 등 계약 상대방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수 직접 보관하고 있음 ○ 감사원 감사의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계약상대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 제출요구를 할 수 있으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p><input type="checkbox"/>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자체감사 활동에 제약이 많음 <p><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및 계약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자체감사 활동의 실효성 제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text-align: center;"> <p>현 행</p> <p>제20조(자료제출요구) ① ~ ⑤ (생 략)</p> </div>	<p>(감사원)</p>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의 견</p> <p>제20조(자료제출요구)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신 설 > 감사기구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상대방(그 계약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div> <p>□ 관계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 요구) - 이하 생략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2. 공직자윤리법 개정 건의 (조사담당관, '23. 7. 11.)</p>	<p><input type="checkbox"/>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단,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 가능 <p><input type="checkbox"/>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가 민간에 취업하여 인허가, 계약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나, 퇴직공직자가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취업하는 부분까지 제한되어 전문성 발휘 등에 곤란 ※ 산하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법, 예산범위 내 운영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어려움 <p><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직유관단체에 해당 지자체의 퇴직공직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전문성 발휘 등 공익적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하여 취업심사 면제대상으로 신설 건의 <p><input type="checkbox"/>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p>(인사혁신처)</p>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div data-bbox="587 331 1198 398"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현 행</div> <p data-bbox="614 443 1038 477">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p> <p data-bbox="614 499 1166 689">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p> <ol data-bbox="614 712 1166 1059"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상대비예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2.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3.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div data-bbox="587 1126 1198 1193"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20px;">개 정 의 견</div> <p data-bbox="614 1238 1038 1272">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p> <p data-bbox="614 1294 842 1328">⑨ (현행과 같음)</p> <ol data-bbox="614 1350 1166 1541"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 신 설 >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직유관단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소관 업무</u>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조사담당관, '23. 8. 16.)</p>	<p><input type="checkbox"/>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연간 외형거래액 등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기관 규정 - 인사혁신처 취업심사 대상기관 22,500여개 고시 <p><input type="checkbox"/>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심사 회피 목적으로 계열회사에 취업하여 비리 유착 - 취업심사 회피 목적으로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계열회사에 우회적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 <p>※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회사</p> <p><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회사까지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령 개정 건의 - 취업심사 대상기관(영리 사기업체 분야) 건의 <p><input type="checkbox"/>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현 행</p> <p>제33조(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p> <p>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p> <p>1의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p> </div>	<p>(인사혁신처)</p>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의 건</p> <p>제33조(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신 설 > 위 1호 및 1의2호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의 계열회사. 이 경우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p> <p>※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략 ~</p> <p>11.“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p> <p>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p> <p>※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회사 ~ 중략 ~ 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중략 ~</p> <p>② ~ 생략 ~</p>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4.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건의 (안전감사담당관, '23. 3. 23.)</p>	<p>□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하도급 분야’ 감사의 주요 지적 사항으로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됨. ○ 관련 규정에는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해당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급제출하여야 함. <p>□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에는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발주자-건설사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규정상 직접지급 합의서의 작성기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사의 착공일 이후까지 잘못 해석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p>⇒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은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접지급합의서의 작성 기한 또한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p> <p>□ 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와 관련된 ‘직접지급합의서 작성기한’을 해석상 혼선 방지를 위해 명시적으로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규정할 것을 개정 건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p>(국토교통부)</p>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제2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현 행</p> <p>제34조의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p> <p>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의 견</p> <p>제34조의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p> <p>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 까지 발주자·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추 가 ></p> </div>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5. 발주자의 하도급 및 건설기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국토부 법령 및 고시(지침) 개정 건의 (안전감사담당관, '23. 5. 19.)</p>	<p>□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대부분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22년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 154건 중 건설기계 대금 체불 98건으로 63% 차지) ○ 발주자는 하도급 관리에 대해 감리자, 시공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공정·품질관리 등 공사관리 업무를 우선시, 하도급 관리는 감리자·시공사에 주로 의존 <p>□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감독 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시행되어 공사관리에 대한 발주청 역할 및 개입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령상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발주청이 감리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업무 범위로 품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해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 ⇒ 발주청이 감리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하도급 위반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책임 및 처벌근거 미약 ○ 소규모 관급공사 건설기계 관리·감독 의무 조항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 계약에 관한 확인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리)가 있는 현장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 「건설공사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에도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업무에 건설기계 관련 사항이 부재 ※ 「건설공사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51조(안전관리)에 따라 	<p>(국토교통부)</p>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미등록 건설기계, 기계검사, 구조변경 등을 위반한 건설기계(천공기, 타워크레인 등 한정)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은 존재</p> <p>□ 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부조리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건설기계 관리·감독 의무 조항 신설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2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6조, 제118조 개정) ○ 하도급 분야 관리·감독에 대한 발주청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해 하도급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조항 신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 개정) <p>□ 관련 규정</p> <p>< 건설기계 관리·감독 의무조항 신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제2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현 행</p> <p>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p> <p>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u>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u>」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div>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개 정 의 건</div> <p>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p> <p>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 각 호의 공공 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삭제 ></p> <p>○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6조, 제118조</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top: 10px;">현 행</div> <p>제116조(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p> <p>1~14. 생략</p> <p>1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도표</p> <p>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① 공사 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2. 공사 시공단계</p> <p>가~카. 생략</p> <p>타. 근로자 노무비 청구 및 지급 내역서(매월)</p>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개 정 의 건</div> <p>제116조(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1~14. 생략 15. <신설> 건설기계 투입 현황 및 계약관련 서류 1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도표</p> <p>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① 공사 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단계 가~카. 생략 타. 근로자 노무비 청구 및 지급 내역서(매월) 파. <신설> 건설기계 대금 청구 및 지급 내역서</p> <p>□ 관련 규정 < 하도급 분야 관리·감독 의무조항 신설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 제10조</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top: 10px;">현 행</div> <p>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자 생략</p>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의 건</p> <p>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p> <p>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가~자 생략</p> <p>차. < 신 설 > <u>하도급 계약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에 관한 지도</u></p> </div>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6.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감사담당관, '23. 7. 11.)</p>	<p>□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원법」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자체감사를 감사원 감사를 보충·대행하는 수준으로 여기는 경향 존재 ○ 감사원의 감사대상·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반면, 관련규정으로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제하고 있어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원리 및 지방의 특수성 반영 필요 <p>□ 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 제정안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감사기구 조직구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존중 - 제20조(자체감사의 대상기관) : 자체감사 대상 범위의 위임 근거 마련 -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등) : 계약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조항 신설 - 제24조(사전컨설팅 감사) : 사전컨설팅 관련 조항 신설 - 제34조(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범위)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범위를 명확화 - 제35조(감사의 대행) - 제39조(중복감사의 이유제시 요청) : 중복 감사시 이유제시 요구권 신설 - 제45조(벌칙) : 감사거부, 자료제출거부, 감사 방해에 대한 형사처벌 	<p>(감사원)</p>